

##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 —

### 개정이유

- 입찰수수료 전면 폐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으로 입찰관련 행정비용 감소
  -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유지와 감사원 및 행자부의 폐지 권고
- 수산업법 관련 신청 수수료 신설
  - 행정자치부의 수수료·사용료 현실화 추진계획 및 수산업법 및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의 수수료 징수 관련 규정의 개정

### 주요골자

- 입찰참가 신청 수수료(10,000원/1건) 전면 폐지(별표1,2의 제1호)
- 수산업법에 관한 기타제증명 1건 인상(300원→500원) 조정(별표1, 14의 제1호)
- 농수산관계 인가, 허가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수수료 11건 신설(별표 1, 4의 제3~13호)

### 참고사항

- 관련법규 : 수산업법 제92조의 2, 내수면어업법 제23조
- 원가분석표 : 따로 붙임

□ 검토의견

- 동 제정 조례안은 감사원에서 산업자원부 등 22개 기관에 대한 기업 불편사항 실태 감사시 지적된 전자입찰 실시에 따른 입찰수수료 징수의 불합리한 사례를 폐지토록 권고한 내용의 반영과
- 농수산업 관련 인·허가 신고·신청·등록 등 수수료의 현실화 조치계획에 따른 인상조정과 일부 항목의 신설 등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짐.
- 다만, 농수산관계 인·허가 신고·신청·등록 등 수수료의 신설 11건은 지난 1998년 관련법인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종전의 개별법령으로 수수료를 징수하던 것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권한을 이양하면서 징수수수료를 2002년까지 80%수준으로 점진적(붙임 참고자료 활용 : 100~1,600원 → 2,400~5,700원)현실화토록 시달한 바 있으나, 지금까지 현실화는 물론 관련 수수료 징수 근거조차 마련치 않고 당시 개별법령으로 정한 수수료 요율을 적용하여 부과한 것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참고자료】

## 수산업에 관한 제증명 및 수수료 원가분석표(안)

연번	수수료명	징수근거	책정연도	현요율(원)	원가분석액(원)	원가보상율(%)	추가보상요금(원)	개정수수료(안)
1	어업권(지분)이전 인가신청	어업면허및어장에 관한규칙제22조2항	1994	1,000	6,759	14.8	5,759	5,400
2	어업권분할인가 신청	어업면허및어장에 관한규칙제23조1항	1994	1,000	6,759	14.8	5,759	5,400
3	어업권변경인가 신청	어업면허및어장에 관한규칙제24조1항	1994	1,000	5,752	17.4	4,752	4,600
4	어장시설물의철거 의무면제 신청	어업면허및어장에 관한규칙제43조2항	1991	1,600	6,760	23.6	4,146	5,400
5	어업권 원부 열람신청	어업등록령제17조 제1항	1994	100	3,088	19.4	2,988	2,400
6	어업권 원부 등초본교부신청	"	1994	600	3,088	19.4	2,488	2,400
7	내수면어업 면허신청	내수면어업법 제6조	1976	1,000	9,591	10.4	8,591	7,600
8	내수면어업면허 연장허가신청	내수면어업법 제13조	1991	300	7,138	4.2	6,838	5,700
9	내수면어업 허가신청	내수면어업법 제9조	1991	1,000	6,596	7.5	6,196	5,200
10	유해어법의 사용 허가신청	내수면어업법 제19조	신설	-	6,596	-	-	5,200
11	수산물가공업 등록신청	수산물가공업의등록등 에관한규칙제31조항	1991	1,600	6,138	26	4,538	4,900

※개정수수료 : 원가분석액의 80%기준으로 산정(개정)

#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77호
----------	-------

제출년월일 : 2006. 3. 29  
제 출 자 : 예산군수

## 1. 제안이유

- 입찰수수료 전면폐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으로 입찰관련 행정비용 감소
  -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유지와 감사원 및 행자부의 폐지 권고
- 수산업법 수수료 개정
  - 행정자치부의 수수료·사용료 현실화 추진계획 및 수산업법 및 내수면 어업개발촉진법의 수수료 징수 관련 규정의 개정

## 2. 주요골자

- 입찰참가 신청 수수료(10,000원/1건)전면폐지  
[안]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별표 1)의  
〈인가, 허가신고, 신청, 등록, 지정〉 중 2의 제1호 삭제
- 수산업에 관한 기타제증명 1건 개정(300원에서 500원으로)  
[안]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별표1)의 〈증명〉 중14의 제1호 개정
- 농수산관계 수수료 규정 11건 신설 [붙임]  
[안]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별표 1)의  
〈인가, 허가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중 4의 제3~13호 신설

##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수산업법 제92조의 2, 내수면어업법 제23조
-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기타자료 : 원가분석표 [붙임]

예산군 조례 제277호

##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 <증명> 중 제14호 기타 제증명의 1)수산업에 관한 증명”을 “수산업에 관한 증명 및 확인”으로 하며, 수수료액 “300”원을 “500”으로 한다.

별표1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등> 중 제2호 재무관계의 “1)입찰참가 신청”을 삭제한다.

별표1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등> 중 제4호 농수산관계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 고
<인가,허가신고,등록,지정,확인 등>			
4. 농수산관계			
3) 어업권(지분)이전 인가 신청	1건	5,400원	
4) 어업권분할인가 신청	1건	5,400원	
5) 어업권변경인가 신청	1건	4,600원	
6) 어장시설물의 철거 의무면제 신청	1건	5,400원	
7) 어업권 원부 열람신청	1건	2,400원	
8) 어업권 원부 등초본교부신청	1건	2,400원	
9) 내수면어업면허 신청	1건	7,600원	
10) 내수면어업면허 연장허가 신청	1건	5,700원	
11) 내수면어업허가 신청	1건	5,200원	
12) 유해어법의 사용 허가신청	1건	5,200원	
13) 수산물가공업 등록 신청	1건	4,900원	

###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납부한 수수료는 이 조례에 의하여 납부한 것으로 본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현 행			
[별표1]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 (단위:원)				[별표1]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 (단위: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증명> 1.~13.(생략) 14.기타 제증명 1)수산업에관한증명 2)~9)(생략)	1통	300원		<증명> 1.~13.(현행과같음) 14.기타 제증명 1)수산업에관한증명 및 <u>확인</u> 2)~9)(현행과같음)	<u>1통</u>	<u>500원</u>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확인등> 1. (생략) 2. 재무관계 1)입찰참가신청 4. 농수산물관계 1)(생략) 2)(생략) 3) <신설> 4) <신 설> 5) <신설> 6) <신 설> 7) <신 설> 8) <신 설> 9) <신 설> 10) <신 설> 11) <신 설> 12) <신 설> 13) <신 설>	1매 1건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200원 500원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확인등> 1. (현행과같음) 2. 재무관계 1) <u>삭제</u> 4. 농수산물관계 1)----- 2)----- 3)어업권(지분)인가신청 4)어업권분할인가신청 5)어업권변경인가신청 6)어장시설물의철거의무면제신청 7)어업권원부열람신청 8)어업권원부등·초본교부신청 9)내수면어업면허신청 10)내수면어업면허연장허가신청 11)내수면어업허가신청 12)유해어법의사용허가신청 13)수산물가공업등록신청	- -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 - 5,400원 5,400원 4,600원 5,400원 2,400원 2,400원 7,600원 5,700원 5,200원 5,200원 4,900원	

## 【참고자료】

## 수산업에 관한 제증명 및 수수료 원가분석표(안)

연번	수수료명	징수근거	책정연도	현요율(원)	원가분석액(원)	원가보상율(%)	추가보상요금(원)	개정수수료(안)
1	어업권(지분)이전 인가신청	어업면허및어장에 관한규칙제22조2항	1994	1,000	6,759	14.8	5,759	5,400
2	어업권분할인가 신청	어업면허및어장에 관한규칙제23조1항	1994	1,000	6,759	14.8	5,759	5,400
3	어업권변경인가 신청	어업면허및어장에 관한규칙제24조1항	1994	1,000	5,752	17.4	4,752	4,600
4	어장시설물의철거 의무면제 신청	어업면허및어장에 관한규칙제43조2항	1991	1,600	6,760	23.6	4,146	5,400
5	어업권 원부 열람신청	어업등록령제17조 제1항	1994	100	3,088	19.4	2,988	2,400
6	어업권 원부 등초본교부신청	"	1994	600	3,088	19.4	2,488	2,400
7	내수면어업면허 신청	내수면어업법 제6조	1976	1,000	9,591	10.4	8,591	7,600
8	내수면어업면허 연장허가신청	내수면어업법 제13조	1991	300	7,138	4.2	6,838	5,700
9	내수면어업허가 신청	내수면어업법 제9조	1991	1,000	6,596	7.5	6,196	5,200
10	유해어법의 사용 허가신청	내수면어업법 제19조	신설	-	6,596	-	-	5,200
11	수산물가공업 등록신청	수산물가공업의등록등 에관한규칙제3조항	1991	1,600	6,138	26	4,538	4,900

※개정수수료 : 원가분석액의 80% 기준으로 산정(개정)